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아동노동 연루와 관련해서

김종철(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I. 논의 전제

-아동노동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1.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 논의를 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기업과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아동노동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없이는 사실 아동노동 근절을 둘러싼 모든 논의와 정책과 활동은 진정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2. 그런데 ‘아동노동’과 ‘근절’이라는 두 단어의 조합이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에게 아동노동은 심각한 주제가 아닌것 같아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92년 부터 IPEC(International Programme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r)을 통해 2016년까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근절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널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사회 책임 투자를 하는 외국의 투자자들에게는 아동노동에 연루되어있는 기업은 금지된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과 같은 정도로 투자 회피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공기업인 조폐공사가 아동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면필프를 원료로 해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지폐를 생산하고 있다고 해도 기업과 시민들은 물론이고 정부도 이 문제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3. 2013년 아동노동에 연루된 한국기업들을 조사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과 대사관 공무원들을 만나 인터뷰 한 적이 있다. 놀랍게도 가장 흔하게 들었던 이야기는 “아동노동이라도 해야지 가정이란 국가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과 “우리도 어릴 때 그런 노동을 많이 했다”라는 것였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자 중에는 “12세 미만의 사람이 아동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4. 첫번째와 두번째 대답은 아동노동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시 두번째와 세번째 대답은 아동노동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동노동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동노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아동노동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5. 주지하다시피, 18세 미만의 사람이 아동의 잠재성과 존엄성을 박탈하고 정신적, 신체적, 도덕적 성장에 해가 되는 노동이 아동노동이다. 더 구체적으로 ILO가 통계 등을 위해 사용하는 2008년 국제노동통계가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r Statisticians)에서 구축한 프레임워크에 의할 경우 아동이 하는 일의 성격과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아동노동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사람이 ILO협약 제182호에서 말하는 가혹한 노동 또는 위험한 노동(위험한 산업/직업에서 일, 장기간의 일, 위험한 노동 조건에서 일은 모두 위험한 노동이다)을 하는 경우 모두 아동노동에 해당한다. 또한 가혹한 노동이나 위험한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2세 미만의 사람이 경제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아동노동에 해당하며, 12세 이상부터 15세 미만의 사람이 가벼운 정도 이상의 일(1주일에 14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라면 아동노동에 해당한다.

6. 그렇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하는 ‘아동노동’과 신체적, 정신적, 인격적 성장에 해가 되지 않는 ‘아이의 일’은 구별해야 한다. 아이의 일은 공부나 놀이 시간외 휴일이나 자유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집안 일을 돕는 것인데, 아이들은 그 일을 통해 자신이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장래에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노동은 아동의 자유를 박탈할 뿐 아니라 아동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여 결국 아동의 미래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아동은 노동 현장에서 학대를 당하기가 쉽고, 아동 시절에 아동노동으로 인해 입은 피해의 영향은 장기적일 수 있고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7. 하지만 아동노동은 아동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친다. 임금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성인 실업이 증가할 뿐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아동을 교육을 시키지 못하여 한 국가의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도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8. 이렇게 아동노동 문제가 아동 개인 뿐 아니라 한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근절되어야한다고 할 때, 한국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아동노동 문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II. 논의의 배경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국기업의 아동강제노동 연루

9.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논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도 여전히 아동노동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국 기업의 아동노동 연루는 개발도상국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논하기 전에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이 아동강제노동 연루되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10. 아동노동에 연루되는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아동노동에 연루되어 있다고 언론 등을 통해 보고된 사례는 크게 3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기업이 아동을 직접 고용해서 아동노동을 시키는 경우이다. 둘째는 한국기업의 공급망에서 아동노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세째는 한국기업이 보상 내지 위로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아동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이다.

11. 첫번째 범주는 기업이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두번째와 세번째는 기업이 아동노동에 기여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 두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우즈베키스탄 아동노동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2. 세계 6 대 목화 생산국이고 5 대 목화 수출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목화는 국부의 원천으로 소위 하얀 황금으로 불리고 있다. 국가가 중앙에서 1/3 가격으로 목화를 독점적으로 매입해서 국가 소유의 무역회사를 통해서 수출하므로 사적으로 목화를 팔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목화 밭에다가 다른 농작물을 심을 수도 없다.

13. 그런데 목화를 수확하는 9 월부터 3 개월 동안 어른들뿐 아니라 아동들이 강제로 목화밭에서 노동을 한다. 강제노동을 하는 아동들은 보통은 11 살에서 17 살 정도라고 하는데 어린 경우에는 7 살짜리도 있다. 보고서 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50 만에서 200 만명의 아동들이 강제로 동원이 되어 10kg 에서 50kg 의 목화를 판다고 한다. 아무 장비도 지급 받지 못해서 농약과 살충제 등 화학 물질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목화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곳 근처의 학교 교실 등 열악한 숙소에서 머물게 된다. 기본적인 음식과 물 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관계 수로에서 흐르는 물을 먹다가 병이 난 경우도 있다.

14. 이에 대해 20 년 동안 카리모프라는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아동강제노동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 많은 유엔기구와 국제 인권단체 등에서 그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아동강제노동에 대해 확인을 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을 하다가 폐쇄 당한바 있는 국제적인 인권 NGO 인 휴먼라이츠와치는 이와 관련해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 프랑스 NCP 는 2012 년에 우즈베키스탄 아동강제노동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수 많은 국제인권기구도 그동안 우즈베크 아동강제노동을 인정한 바 있다. 2006 년 유엔사회권위원회, 2006 년과 2011 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0 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0 년 유엔인권위원회, 2013 년 유엔고문방지 위원회가 우즈베키스탄 아동강제노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15.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의 아동강제노동에 한국기업 나아가 한국 공기업이 연루되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정부도 우즈베키스탄의 아동강제노동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1 년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한국기업이 (우즈베키스탄) 아동강제노동에 연루되어 있음에 우려를 표시였고, 심지어 2013 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인권정례검토(UPR)에서는 한국 정부가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목화밭에서의 아동노동을 근절할 것을 권고하기 까지 했다.

16. 2013 년에 사상 처음으로 ILO 와 IPEC 이 공동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하여 아동노동에 관해 조사를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감시하에 제한적인 조사에 그치고 말았다. 아직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으나, 위 보고서 초안이 언급된 문서들을 보면, 목화 수확과정에서 아동노동은 있었으나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동원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17. 그러나 2013 년 하반기에 공익법센터 어필 등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는 우즈베키스탄에 직접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1)아동 강제노동, 특히 18 세 미만인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강제노동이 전국적으로 있으며, 2)성인강제노동은 과거보다 더 심해졌는데, 의사와 지방 공무원 뿐 아니라 학교의 교사들도 목화 채취를 위한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 3)무엇보다도 교사들이 강제노동에 차출되기 때문에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없기 때문에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었다. 4)또한 강제노동을 하게된 성인들이 아동들을 고용해서 새로운 아동 임금노동이 출현하고 있었다.

18. 또한 아동노동환경에 대해서는 목화밭이 학교에서 가까운 곳은 교실을 숙소로 쓰고 있었으며, 멀리 떨어진 곳은 축사 등을 개조해서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이 쥐나 벌레에 노출되어 있었다. 음식의 경우에는 그 양과 질이 상당히 적고 낮을 뿐 아니라, 물조차 제대로 공급이 안되서, 2013 년 9 월 22 일 경 지자크 지역의 경산업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목화밭에서 웅덩이에 고인 물을 먹고 집단적으로 병에 걸리기도 했다.

19. 할당량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하루에 60kg 을 따야 하는데, 노동에 대한 보수는 1kg 당 통상 150 솜으로 한화로 85 원 정도로 할당량을 다 채우면 하루에 5 천원을 조금 넘는 금액을 받았다. 그러나 식비와 전기세, 치료비, 교통비, 심지어는 숙소 사용비까지 공제가 되어 대개 받는 보수의 50%는 차감이 되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은 그나마도 못가지고 가고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받게될 장학금에서 차감되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을 거부하거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은 그에 대한 벌로 매를 맞거나 학교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심지어는 강제로 퇴학을 당하기도 하였다.

20. 그런데 기업은 아동을 직접 고용한 경우가 아니라, 위와 같이 공급망에서 아동노동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아동노동에 대응하는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III. 기업의 역할

-상당주의의무(due diligence) 이행

21. 아동노동 근절과 관련한 기업의 역할을 논하기에 앞서서 기업의 일반적인 아동노동과 관련한 인권 존중 의무 내지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수범자가 아니기 때문에 ILO 협약 및 국제인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규범적인 근거로 말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은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할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회적 각 기관”에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2. 하지만 위 선언을 경성규범이라고 보기 힘들고, 가사 위 선언이 국제관습법상 지위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인권존중의무를 규정했다고 한 부분은 전문이어서 조항과 같은 규범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23. 그러나 기업은 등록된 국가의 실정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노동에 관해서 관할 국가의 실정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 한도 내에서 기업은 인권 존중 책임이 아니라 인권 존중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국내 실정법이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에도 적용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형법과 같이 국외 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법은 국내 영토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동노동에 관한 실정법은 국외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출한 그 국가에서 아동노동에 관한 실정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한국 기업은 법적인 구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노동에 관한 ILO 협약(제182호 및 제138호)은 대부분의 나라가 비준을 하였으므로, 체약국에서 별도의 국내법 없이 국제법이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바로 그 나라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 역시 그 법을 지켜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발생한다.

25. 지금까지의 논의는 경성규범에 관한 것인데, 경성규범은 아니지만 모든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이나 글로벌 콤팩트, ISO 26000, GRI, 유엔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 및 그 지도 지침과 같은 연성규범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인권 존중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인권 존중 책임은 있으며, 그 근거는 위와 같은 연성규범이 될 것이다.

26. 연성규범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의 근거라고 할 때에라도 기업이 존중할 책임이 있는 인권의 범위는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모든 인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아동노동에 관한 인권도 포함이 된다고 할 것이다.

27. 그리고 아동노동과 관련해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아동을 직접 고용하여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아동노동과 관련한 인권침해에 간접적으로도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기업과 인권 지도 지침의 표현에 따르면 인권의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

28. 기업이 아동노동과 관련해 부정적 영향에 연루되는 경우를 크게 3가지로 구별 할 수 있는데, 1) 첫째는 자신이 아동노동을 ‘야기(cause)’하는 경우이다. 앞에서 들었던 예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직접 또는 공급망을 통해서 아동노동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2) 두번째는 아동노동에 ‘기여(contribute)’하는 경우이다. 앞의 예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이 아동강제노동에 의해 수확된 목화를 가지고 실을 만들거나 지폐를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경우이다. 3) 세번째는 자신이 아동노동을 야기하거나 기여하지 않지만, 기업관계로 ‘관련(linked)’되어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해외 아동성매매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으로 부터 물건을 공급 받고 있는 경우이다.

29. 아동노동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 기업은 그 영향을 해결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의 내용은 그 연루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아동노동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해야 하고, 이미 야기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구제 해야 한다. 예방이라고 할 때에 기업의 최고 경영진에서 아동노동 근절에 관한 정책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고, 채용과정에서 철저한 나이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아동노동 여부(업무현장에 아동이 있는지 여부, 12세 미만인 고용되어 있는지 여부, 고용된 15세 이상 아동이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0. 아동노동에 기여를 했거나 기여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아동노동이 일어났다면 기여를 중단해야하고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직 아동노동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여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활용하여 직접 아동노동을 사용한 사업체가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를 들자면, 최고 경영진이 아동노동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루되지 않겠다는 정책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고, 아동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목화에 대해 구매를 중지하고, 기업의 자신의 혹은 다른 기업과 함께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아동강제노동의 관행을 바꾸도록 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와 함께 자신이 사용하는 목화가 아동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31. 기업관계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련이 되는 경우에, 영향력을 사용해서 공급업체가 직원들이 아동의 성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고, 공급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기업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대우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대우텍스타일이 우즈베키스탄 아동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목화로 면방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이키는 대우인터내셔널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아동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며, 인조가죽을 공급 받는 대우인터내셔널 부산 공장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32. 이처럼 기업은 아동노동에 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할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상당주의의무(혹은 실사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3.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동노동과 관련된 상당주의의무를 정의하면, “아동노동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이에 따라 행동하며, 그 행동에 대한 반응을 추적하고, 아동노동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에 관해 소통을 할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34. 더 구체적으로는 1) 아동노동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겠다고 하는 최고 경영진의 정책 약속이 대내외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하고, 2) 그러한 정책 약속이 기업운영정책과 절차에 반영이 되어야 하며, 3) 아동노동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를 하고, 4) 그 평가를 종합하여 아동노동을 중지하고, 예방하고, 아동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취하며, 5) 기업이 아동노동을 야기하거나 아동노동에 기여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6) 이러한 행동과 구제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반응을 추적하고, 7) 장기적이고, 적절하며, 접근 가능한 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강제 노동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5. 우즈베키스탄 아동강제노동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온 대우텍스타일과 GKD의 모회사인 조폐공사와 포스코는 모두 아동노동 철폐와 강제노동 근절을 원칙으로 하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 기업들은 자신들이 아동노동을 야기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아동노동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들이 그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상당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36. 상당주의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진에서 자신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아동노동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정책 약속을 하고, 자신들이 구매하는 목화가 아동노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아동노동을 중지 내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7. 지금까지 아동노동 근절과 관련한 기업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IV. 정부의 역할

-NCP 개혁과 NAP 제정

38. 한국에 아동노동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문서는 ILO 협약 제 182 호 및 제 138 호, 유엔아동권리협약,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유엔자유권규약, 유엔사회권규약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이와 같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인 규범과 기준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일반적인 의무를 진다. 해외 한국기업의 아동 노동 연루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국가의 인권 보호의무이다. 제 3 자가 아동노동을 사용하여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그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권 침해를 당하는 아동이 외국인일 경우 국가에게 역외 의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39. 국가의 역외 의무에 관한 논의는 그 동안 유엔헌장 제 55 조와 제 56 조의 해석을 통해 주장되어 오다가, 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제 1 조 내지 제 3 조와 제 16 조)과 자유권위원회의 유엔자유권규약 제 2 조 제 1 항에 관한 일반논평 제 33 호에서 확인되었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장벽 건설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재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2011 년 역외 의무에 관한 마스트리트 원칙으로 정리가 되었다.

40. 위 마스트리트 제 3 원칙에 의하면, 모든 국가는 자신의 역내와 역외에서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시킬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다.

41. 이에 따라 유엔사회권위원회(2011 년)과 유엔자유권위원회(2012 년)는 독일 기업인 Kaffee Gruppe 의 자회사인 Kaweri Coffee Plantation 가 우간다 Mubende 지역에 대규모 커피 농장을 건설하면서 우간다 정부군의 주민에 대한 강제이주에 연루된 것에 대해, 독일 기업이 유엔사회권규약과 유엔 자유권규약에 따라 인권을 보호할 역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한 위 위원회들은 독일 정부는 독일 기업의 해외 투자에 관한 정책을 주재국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독일 기업의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강화하라고 권고하였다.

42. 국가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역외 의무에 관한 논의가 위와 같이 국제적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특히 아동노동에 연루된 한국기업들을 규제하고 해당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아동노동 문제를 포함해 해외 한국기업들의 노동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소속 공무원 중 노동분야 주재관 진출은 2012 년과 2013 년에 7 명에 불과했고, 2014 년에는 그것도 5 명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43. 아동노동 근절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관해서 크게 3 가지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첫째 정부의 역할에 관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우선순위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그 기업의 활동에 얼마나 국가가 개입되어 있는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44. 연금법을 개정해서 공적기금이 인권에 기반 한 투자가 이루어 지게 하고, 특히 아동노동에 연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해외한국 기업에게 대출할 때에 아동노동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루되어 있는 기업에게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해야 한다. 공적 조달과 관련해서도 아동노동에 연루되어 있는 해외 기업로 부터 물건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기업의 투자와 운영 단계에서 아동노동의 관점에서 경영을 평가하고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 등을 개정해서 아동노동에 의해 생산된 물건에 대한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

44. 그 외에도 코트라가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들이 아동노동과 관련한 규범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아동노동에 연루되었을 때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5. 현재 수출입은행은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위해서 국가에 관한 기본정보, 투자 환경 정보, 국가 신용도에 관한 정보, 투자환경위험평가, 환경 심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나, 인권 위험에 대한 전문적이 평가를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 10은 “수출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과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동노동에 연루되는 위험이 경영에서 발생하는 위험 중에 가장 심각한 위험 중에 하나임을 인식하고 각국의 인권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해외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제공하고, 투자지원과 연동시켜야 한다.

46. 그리고 두번째는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개선이 일어나야 한다. 현재에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 등 사법절차를 가용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쉽지 않고 부적절하기 까지 하다. 예를들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를 모아서 소송을 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국내 법원에 현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에는 비사법적인 분쟁해결 절차, 특히 NCP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47. 하지만 NCP는 오랫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반성과 성찰 없이 사무국을 상사중재원으로 옮기면서 외형상 독립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2011년 OECD가이드라인 개정내용에 따라 효과성과 투명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는 절차와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48. 마지막으로 해외 한국기업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의 필요하다. 사실 해외 한국기업들의 아동노동 연루를 해결하는 수단과 관련해서 단편적으로 한두 개의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전체적인 안목과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일관되고 명확한 정책적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국가차원의 행동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49. 이와 관련해서 영국 외무부는 2013년 8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업과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이후에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잇달아 NAP를 만들었는데, 이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인권침해 일반 뿐만 아니라 아동노동의 예방과 구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50. 염두에 두어야 할 위 영국 기업과 인권 행동계획의 특징은 크게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국제적인 기업과 인권 관련 메커니즘(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유엔글로벌콤팩트, 존 러기의 유엔 기업과 인권 프레임 워크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위 행동계획은 존 러기의 유엔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의 이행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둘째는 영국이 처한 특수한 맥락을 고려해서 만들어 졌다는 점이다. 셋째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인권침해 모니터 링과 관련해서 재외공관이나 우리의 코트라에 해당하는 UKTI(UK Trade and Investmen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외교부와 UKTI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그 나라의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엔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와 같은 관련 규범들을 홍보하고, 기업과 인권과 관련해서 일하는 인권옹호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사관들을 교육하기로 한 점이다.

51. 이러한 유럽의 NAP에서 독특한 중에 하나는 모두 외교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인권 일반에 관한 NAP는 법무부(인권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유럽 국가들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된 사무실만 유럽에 등록해 두고 활동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 하므로, 국가의 인권보호 책임이 주로 외국에 있는 자국 기업들에 관해 더 많이 적용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일은 외교부에서 맡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한국의 경우에도 아동노동 근절을 포함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NAP를 만들려고 할때 어떤 부처에서 담당을 해야하는지 관해서 유럽의 예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V. 다시 인식제고의 중요성

-아동 노동 근절에 관한 NAP 제정의 인식제고 효과

52. NAP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지만, 잘만 만들어지면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규범이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당국과 이해관계자와 나아가 대중의 인식 제고가

중요한데, 아동노동에 관한 상세한 NAP가 만들어진다면, 아동노동이 무엇이고 왜 그것이 아동 개인에게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나쁜지에 대한 인식 제고에 많은 유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은 정부부처든, 기업이든, 아니면 대중이든, 아동노동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나쁜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53. NAP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각종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입니다. 정부부처간에도 협의를 해야 하고, 정부부처와 시민사회와도 협의를 해야 하고, 특히 시민사회와 기업측도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 과정 역시 실질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아동노동 문제에 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다.